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

■ 최혁진의원·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4444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	2
※ 참고자료	8
1. 자활기업 제도 개요	8
2. 마을기업 제도 개요	9
3. 중소기업자 포함 기업 현황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최혁진의원·김동아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20.
3. 회부연월일 : 2025. 1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적용대상을 규정하면서 매출액·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갖춘 영리기업 외에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기업과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자활기업은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련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안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 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 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 (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 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는 제외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 ----- ----- ----- -----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신설>	3.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 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기업
<신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중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활기업
3. ~ 5. (생략)	5. ~ 7.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와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¹⁾은 이 법의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규모 요건(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 이하) 등을 만족하는 영리기업, 그 밖에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일부 비영리단체를 영위하는 자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자는 이 법과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창업지원(이 법 제5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²⁾), R&D지원(이 법 제6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³⁾), 국내외 판로지원(이 법 제7조, 제14조,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4), 기업 구조 전환 지원(이 법 제9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5), 상생지원(이 법 제10조, 제11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6), 인력지원(이 법 제15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7), 금융 지원(이 법 제19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8)9)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5)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8) 「기술보증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한다.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위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기업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활기업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¹⁰⁾에 따른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기업을 말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¹¹⁾에 따른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설립 및 운영 주체인 조합 또는 사업자로, 취약계층의 공동창업을 통한 탈빈곤 지원 및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의미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제63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①기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용·관리한다.

⑤ 기금 관리자는 제66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0)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6.8.15. 시행 예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체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춘 것

2. 설립 및 운영 주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할 것. 다만, 설립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설립 이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그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算定)한다.

3.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갖춘 것

함.

개정안은 이러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련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완하려는 긍정적인 취지로 이해됨.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원칙적으로 각종 지원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협동조합 등은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개인사업자, 주식/유한회사, 협동조합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부분은 이미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으며, 개정안에 따라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복지센터, 간병공동체, 마을회, 부녀회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임.

설립유형별 마을기업·자활기업 비중 현황(2024년말 기준)

(단위: %)

설립유형	개인 사업자	주식/ 유한회사	농업 회사법인	영어,영농 조합법인	협동조합	그 외	합계
마을기업	0.8	16.9	6.2	37.6	34	4.6 [*]	100
자활기업	41.7	37.9	-	-	20.1	0.3 ^{**}	1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주: 개인사업자, 주식/유한회사, 협동조합 등은 중소기업에 기 포함

* 마을회, 부녀회, 전우회, 종주단, 복지재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중소기업자가 아님

** 복지센터, 간병공동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중소기업자가 아님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의 경우 지역공동체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의 고용·자립 지원 등 정책 목적에 따라 설립되어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미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된 유사한 설립 목적을 가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설립유형과 무관하게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정책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이해됨.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463

【참고자료】

1

자활기업 제도 개요

- **자활기업 개념** : 취약계층의 공동창업을 통한 탈빈곤 지원 및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유형) 전국/광역/지역 단위로 있으며, 전국 5대 표준화사업(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활용, 음식물재활용) 및 외식·도시락, 산모도우미 등 종사
 - * 근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설립요건** :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로 구성된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 **인증절차** : 설립요건 및 사업계획 등을 자활센터(지역/광역/중앙) 연계 검토 후 보장기관(기초지자체/광역지자체/보건복지부)에서 인증
- **지원혜택** : 창업 및 사업자금, 신용보증기금 융자보증, 공공기관 우선구매, 조기창업 인센티브, 고성장 예측기업 인센티브, 임대보증금, 국·공유지 임대, 인건비 지원 등
- **설립구분별 자활기업 현황**(‘24말 기준)

구분	개인사업자	주식/유한회사	협동조합 (사회적 포함)	그 외*	합계
개사	401	365	193	3	962
비율 (%)	41.7	37.9	20.1	0.3	100

* 복지센터, 간병공동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대상 아님

** 개인사업자,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은 중소기업 대상

2

마을기업 제도 개요

□ **마을기업 개념** : 마을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기업

- (유형) 식품, 의류신발, 공예품, 관광체험, 문화예술, 사회복지, 기타 등

* 근거법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6. 8. 15. 시행예정)

□ **설립요건**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갖춘 법인*

* 주식회사, 영농·영여조합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사단법인, 비법인 등

□ **인증절차** : 해당 시·군 공고 및 접수 → 시·도 심사 → 행안부 지정

* 매년 연말 신규·재지정·고도화 등 마을기업 공고(해당 시·도 주관) 후 심사 진행

□ **지원혜택** : 마을기업으로 지정 시 최대 3년간 1억원 지원(보조금)

< 마을기업 성장단계별 지정·지원 체계 >



□ **설립구분별 마을기업 현황**(‘24말 기준)

구분	개인 사업자	주식/유한/ 합명회사	농업 회사법인	영여,영농 조합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포함)	그 외*	합계
개사	13	291	107	648	586	79	1,724
비율 (%)	0.8	16.9	6.2	37.6	34.0	4.6	100

* 마을회, 부녀회, 전우회, 종주단, 복지재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아님

** 개인사업자,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영여·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등은 중소기업 대상

□ 중소기업자 인정기업 및 마을기업, 자활기업 현황표

구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개정일	2011.7.25.	2014.1.14. ■ 사회적협동 조합 (‘16.1.27.) ■ 이종협동조합 연합회 (‘20.12.8.)	2018.8.14.	2020.10.20.	-	-
근거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마을기업 육성법 * 26.8월 시행예정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설립 유형	- 「민법」에 따른 법인 - 「상 법」에 따른 회사 - 특별법 따 른 법인(협동 조합, 비영리민 간단체 등)	-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 사회적협동 조합, 사회 적협동조합 연합회 - 이종협동조 합연합회	-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 중소기업협 동조합	- 「민법」에 따른 법인 - 「상 법」에 따른 회사 - 특별법 따 른 법인(협동 조합 등)	- 조합 - 「부가가치 세 법」에 따른 사업 자의 형태
업체수 (개사)	3,670	31,467	401	887	1,724	962